

## 자동판매기 설치운영권 계약 일반조건

- 제1조 **[사용목적]** 사용목적은 단양관광공사 만천하스카이워크 내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운영 유상사용허가로 한다.(밀봉된 캔 음료,과자 등만 가능)
- 제2조 **[사용기간]** 사용기간은 사용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.
- 제3조 **[사용료]** 사용료는 낙찰금액(부가가치세 별도)으로 한다. 다만,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.(공공요금 별도)
- 제4조 **[사용료의 납부]** ① 사용료는 단양관광공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일시불로 선납하여야 한다.
- ②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기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단양관광공사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신청을 포기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제재(부정당업자)를 받을 수 있으며,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고, 당해 입찰은 무효로 한다.
- 제5조 **[사용료의 반환]** 납부한 사용료는 제10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외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(기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)
- 제6조 **[손해보험증서의 제출]**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단양관광공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재산가액(건물)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당 단양관광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단양관광공사에서 이미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공제회에 가입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자는 당해 재산의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단양관광공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7조 **[사용허가재산의 보존]**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·수익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내부시설 및 부대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단양관광공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사용자 설치 시설물을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모두 회수 또는 철거하여 허가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 또한 시설물의 원상이 훼손되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.
- 제8조 **[사용허가재산의 부과금]**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

야 한다.

제9조 **[사용자의 행위제한]** 사용자는 단양관광공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.

1.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
2.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
3.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
4. 단양관광공사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 재산에 고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

제10조 **[사용허가의 취소]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공용,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
2.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
3.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
4. 계약상 사용료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
5. 사용기간 중 자판기 운영과 관련한 민원 등으로 인한 시정요구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하여 단양관광공사로 부터 3회의 경고처분을 받았을 때
6. 기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7. 사용허가신청(계약)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
8. 사용자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, 허가취소, 사업자등록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
9. 공공요금 등을 납입하지 않아 독촉납입통보를 받은 후에도 2회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

제11조 **[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등]**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단양관광공사에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.

제12조 **[사용허가의 취소요청]**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 **[사용재산의 반환]**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단양관광공사의 참여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.

다만,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단양관광공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4조 **[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징수]** 사용자는 각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단양관광공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단양관광공사가 원상 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
제15조 **[연고권 배제]** 사용자는 사용허가 및 계약기간 종료 후 당해 사용.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.

제16조 **[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]**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7조 **[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]** 사용자는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단양관광공사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.

제18조 **[사용재산에 대한 지시, 감독]**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단양관광공사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.

제19조 **[기타]** 이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단양관광공사의 결정에 의한다.